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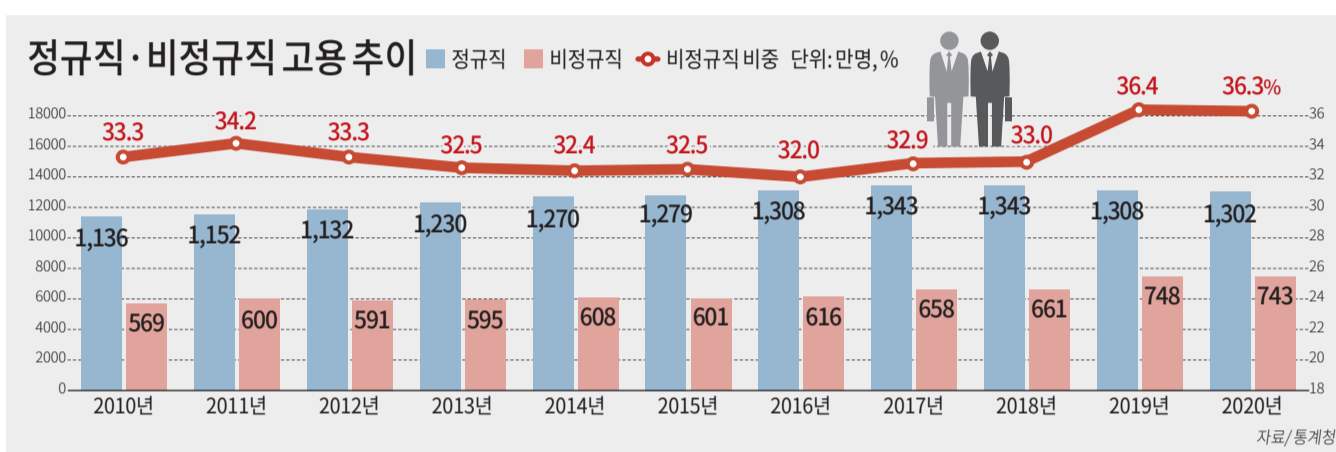
차별에도 저항 못 하는 비정규직... “甲 눈 밖에 날까 두려워”

‘을’이지만 을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을 겪고도 저항하지 못하는, 항의해도 쉽게 묵살당하는 비정규직이 있다. “갑의 눈 밖에 날까봐 그렇죠.” 서울의 사립 OO대학교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정범(가명) 씨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마저 전공의의 과로사를 부르는 합법적 도구라고 비판했다.

전공의법, 40시간 초과근무 허용 법정근무시간 지켜도 과로사 위험 “120시간까지 일하는 경우도 허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전공의의 연속근무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응급상황인 경우, 40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전공의의 수련 시간은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대 88시간까지 추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최대 주 88시간-연속 4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합법화시켜놓은 셈이다. ‘과로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 지침 근무시간은 주 60시간이다. 법정 근무시간을 지키더라도 과로사의 위험에는 늘 노출될 수밖에 없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 협의회가 의사 전용 온라인 플랫폼 ‘메디스테프’를 통해 지난 4월 공개한 ‘2020년 전국 전공의의 병원 평가’ 결과를 보면 전공의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7시간이었다. 김 씨는 “88시간을 훌쩍 넘



겨 120시간까지 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잠은 포기”라고 전했다.

김씨는 “사회에선 의사라면 몽둥고려 갑이라고 본다. 하지만 우리는 병원 안에서 철저한 을이다. ‘환자 생명이 걸려있다’는 부담에 살인적인 초과 근무를 참는 것도 있지만 상급자 눈 밖에 드는 것이 두려워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다. 우리는 인권과 관련해 수면권, 식사권 등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한다. 하지만 사회는 ‘미래에 돈 많이 벌’의사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다.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고, 목소리를 내도 ‘그래봤자 너네는 돈 많이 벌 거잖아’라며 쉽게 묵살당한다”고 말했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규정(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중인 전공의에 대해 지도교수나 상급연차 전공의에 의한 괴롭힘이나 폭력이 고질적인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1만5300여

명(2020년 8월 기준)의 수련의는 피교육자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이러한 상승적인 성추행, 성희롱, 기타 폭력적 행위 등을 감내하고 신고조차 꺼림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병원에 따라 무급 전임의도 있다.

기간제 교사, 부당한 대우에도 썩 정규직 순환 시스템에 재취업 우려 “그저 시험 떨어진 실패자로 인식”

기간제 교사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다. 8년간 기간제 교사를 하다가 지난해 중등교사임용시험에 합격한 이지혜(가명) 씨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한 을’이었다고 평했다. 비정규적이던 8년간 그는 대부분 자기 꺼려하는 학생부, 중학교 1학년 담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아야 했다.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요구하기도 어려웠다.

5년마다 정규직 교사가 순환하는 시

스템에서 ‘소문이 사람보다 먼저 간다’는 말이 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정규직 동료 눈 밖에 나면 나쁜 평판이 생겨 2년 뒤 재취업해야 하는 다음 근무지 취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씨는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비해 내가 하는 일은 그대로, 아니 더 줄었다. 가르치는 내용도, 실력도, 그리고 교사인 나 자체도 그대로지만 정규직이 되고 차별이 사라졌다”면서 “을의 입장에서 동일노동 동일대우를 받지 못하지만, 사회인식으로 비정규직 교사는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시험에 떨어진 실패자’일 뿐 모든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차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미래연구소 김재식 정책위원장, 김은지 연구원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에서 “노동자가 차별을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 차별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불안정한 고용지위로 인해 신고 자체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판정 절차가 복잡해 판정이 내려지는데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노동자들이 실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호 및 접근성을 강화하고, 판정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지난해(8월) 기준으로 742만6000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 2044만6000명 가운데 36.3%다. 직장인 10명 중 약 4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2011년 당시 비정규직 비중은 34.1%였다. 중간에 통계 집계 방식이 다소 바뀌긴 했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전체의 40%를 향해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통계상 기간제, 비기간제로 나누는 한시적 근로자 그리고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일일근로, 가정내근로로 구분되는 비전형 근로자,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가 모두 비정규직에 포함된다.

‘갑’의 눈 밖에 날까봐 노심초사했던 전공의 김씨,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더 달라며 말조차 하지 못했던 기간제 교사 이씨, 새벽 4시 첫 차를 타고 건물 청소일을 나가는 박씨, 더운 여름날 아파트 경비실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경비원 고씨 등이 모두 우리의 가족이다.

/조효정·나누리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비정규직 임금 월 평균 171만원... 정규직 52.9% 수준

» 1면 ‘고용절벽 내몰린 청년’서 계속

중기부의 창업 관련 예산반해도 2016년 당시 연간 3766억원에서 2018년엔 6911억원으로 크게 늘더니 지난해엔 8492억원까지 증가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서강대 경영학과 임채운 교수는 “코로나19는 대학생들의 취업과 창업 둘 다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대규모 공채보다는 수시로 경력을 채용하는 관행이 늘어나며 신입으로 들어가 경력을 쌓을 자리가 부족해졌고, 대학 내 창업동아리나 보육센터 등의 활동도 제약을 받아 창업 열기도 주춤하고 있

다”고 전했다. 비정규직은 더욱 늘고, 일자리간 임금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2014년 당시 32.2%에서 매년 꾸준히 올라 2019년엔 36.4%, 2020년엔 36.3%를 각각 기록했다.

다만 2019년 조사부터 그동안 포착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가 비정규직에 포함되면서 2018년 이전 수치와 비교가 어렵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비정규직 비중은 2015년(32.4%)→2016년(32.8%)→2017년

(32.9%)→2018년(33%)을 거치면서 늘었다.

비정규직이 기간제, 비기간제,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등으로 갈수록 다양화하면서다.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도 증가세다.

월평균임금은 2013년 대비 2020년 현재 정규직이 255만1000원에서 323만4000원으로 26.8%, 비정규직은 143만4000원에서 171만1000원으로 19.3% 각각 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2013년 56.2%에서 2020년 52.9%로 더 벌어졌다.

평균근속기간도 정규직은 2013년 당시 85개월에서 지난해엔 97개월로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30개월에서 29개월로 오히려 줄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돈도 덜 받고, 더 짧게 일하는 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기준 대기업의 월 평균소득은 1인당 515만원이지만 중소기업은 245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이 대기업 근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불안한 플랫폼 종사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음식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택시운전, 화물운송 등이 모두 플랫폼 종사자 영역이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2000년 조사에서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나 일감을 구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명, 이 가운데 일감배정 등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협의의 종사자는 22만명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은 “플랫폼 노동은 그 자체로 새로운 유형의 경제체제로 시장과 기업의 이분법,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이분법 체계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임금노동자와 자영을 나누는 이분법 체계로 설계되고 운영해 온 노동법, 사회보장체계를 플랫폼 노동에까지 적용하기 위한 대변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